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4,559,414	13,936,782
일반회계	425,902,952	12,777,089
특별회계	38,656,462	1,159,694
기타특별회계	38,656,462	1,159,694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824,000	24,7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7,040	16,111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424,541	72,736
기반시설특별회계	81,415	2,442
섬진강댐특별회계	8,216,378	246,491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5,315,973	159,4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329,056	609,8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8,059	27,842

제 2 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619,374천원」과 같다

제 6 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